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58108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중호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7. 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504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21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C아파트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에 관하여’를 ‘C아파트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2016. 6. 30.자 보상합의에서 정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보상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그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상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상합의’라 한다).

제1조(지급액 현황)

①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타절정산합의시 지급키로 한 자사장비비 및 타절정산 보전금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구분(합의보상금)	금 액	비 고
피고 자사장비비	₩17,000,000	
타절정산 보전금액	₩24,739,032	
소계	₩41,739,032	

제2조(합의보상금 지급시기)

① 갑은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을에게 금 사천일백칠십삼만구천삼십이원(₩41,739,032)을 지급키로 한다.② 본 합의에 따른 합의보상금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키로

한다.제3조(을의 의무)

① 을은 본 합의 이후 본 공사로 인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갑은 물론, 발주처, 관할관청, 유관기관 등 그 어느 누구에게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행정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② 을은 본 합의에 따라 갑으로부터 합의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제1조의 미지급금액 전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미지급금액이 없음을 확인한다.2)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41,739,032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14. 피고와 타절정산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15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 그로부터 16일 만에 원고가 41,739,032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상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약자인 하도급인에게 불리한 것인바, 원고의 공박, 경솔, 무경험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6. 14.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15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모든 금액을 반영한 타절정산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별도의 기한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타절정산 합의 당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위 금원에는 재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금원 113,260,968원과 원고의 자사 장비비 등 41,739,032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6. 30. 재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약속하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자사 장비비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상합의를 한 것인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합의를 한 날인 2016. 6. 30. 이 사건 보상합의에서 약정한 금액 41,739,032원을 지급하고, 재하도급업자로부터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은 곳에 해당하는 41,181,210원을 지급하여, 합계 82,920,242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타절정산으로 합의한 추가금액을 최종적으로 모두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보상합의 이후 2016. 7. 5.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보상합의서 제3조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 대금과 관련한 민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타절정산 합의에 따른 금액 중 원고 자사 장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보상합의 즉시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상합의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원, 판사 이상률, 판사 윤동연